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공무원 복식 요건을 법률에 규정〉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6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3.
3. 회 부 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절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방공무원 복식 요건을 법률에 규정

개정안은 소방청장에게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소방
공무원이 적절한 복식(服飾)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소방
공무원 복식을 연구·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제) ① (생략)	제23조(복제)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服飾)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신설></u>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 ---그 밖의 사항은-----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23조¹⁾).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는 소방공무원 제복의 종류·형상, 제복 착용 기간, 제복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소방청훈령)」에서는 제복별 세부 재질²⁾과 복제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복의 기능적·미적 요소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기능적·심미적으로 적절한 복식(服飾)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소방공무원 복식을 연구·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³⁾.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함께 공무원의 제복에 관해서는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착용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⁴⁾ 기능성·안정성·심미성 등 제복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을 점검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 보임.

1) 「소방공무원법」

제23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소방제복별 세부 재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참조

3) 소방청은 제복의 기능성, 안정성에 대한 일선 소방관들의 개선 요구가 있고, 최근 임용된 소방관들은 소방관으로서 자부심 측면에서 제복 디자인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다고 설명함.

4)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외에 군인, 경찰, 교정공무원, 검역공무원,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있는데, 각각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 「군인복제령(대통령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교정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보건복지부령)」,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에서 해당 제복의 종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입법례>

「검역법」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9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①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군계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장활동의 긴급성 및 돌발성 등 복잡다양한 재난상황을 대응하며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점,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 인식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요소들(기능성·안정성·심미성)이 복합된 복제를 착용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복식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제복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유사 법률에는 복제의 착용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제복의 요소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타 제복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소방공무원 제복별 세부 재질

- 근거: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별표 1]

구 분		세 부 재 질	색 상
정복상의		양모 · 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	검회색
근무복	셔츠	양모 · 폴리에스터 · 레이온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	연모래색
	하의	양모 · 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	검회색
기동복	상의, 하의	동복 : 아라미드 · 레이온 · 정전방지섬유	주황색 진한주황색
		하복 : 아라미드 · 레이온	진한군청색
	조끼	폴리에스터 망사	검정색
활동복	상 의	기능성 폴리에스터 이중지	주황색
	하 의	고밀도 기능성(항균)나일론 2-WAYSPAN(동,하복 구분:이면 항균 소재)	검회색
점퍼	춘추	양모 · 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	검회색
	동	양모 · 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	
임부근무복		양모 · 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	검회색
방한과카		고기능 방투습 3Layer : Nylon66 / 불소수지 필름 / Nylon66 (방수,투습,방풍,발수기능 및 고신축 경량소재)	검회색
외투		양모 · 폴리에스터 · 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방지	진한군청색
특수복	훈련복	동복 : 신축성 폴리에스터74%, 고급 코마순면26%	검회색
		하복 : 신축성 폴리에스터83%, 고급 코마순면17%	
	비행복	동복 : 아라미드 · 레이온 · 정전방지섬유	진한군청색
		하복 : 아라미드 · 레이온	
우천활동복		2Layer : 폴리에스터100% 립스탑/PU film(Non-swelling)	주황색
소방모	정 모	모 · 폴리에스터 혼방지 (동정복지)	검회색
	근무모	동 : 폴리에스터100%,양면기모 폴라포리스	검은색
		춘추 · 하 : 폴리에스터100%(발수기능)	
	훈련모	신축성 폴리에스터74% 고급 순면26% (동훈련복지)	검회색
정글모		폴리에스터 100%	검은색
넥타이		폴리에스터 100%	군청색

※ 색상코드 : TCX(미국Pantone사의 Fashion & Home Color Guide-Cottom Edition 컬러코드 임)

- 검회색(19-4013 TCX), 검회색(19-4015 TCX), 연모래색(13-0905 TCX), 검정색(19-3909 TCX), 주황색(16-1257 TCX), 진한주황색(17-1462 TCX), 진한군청색(19-3920 TCX),(19-4010 TCX) 군청색(19-3920 TCX)